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학술연구비 규정

일부 개정 2013년 1월 25일

제 1 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학술연구비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중재심장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연구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자격)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으로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재원) 학술연구비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기금으로 운영하며 연구비 규모 및 방법은 상임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추천)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병원 순환기학 분야의 선임 교수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 소속 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신청) 연구책임자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연구비 운영 지침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소정 양식)
2. 추천서 1부
3. 이력서 1부 (명함판 사진 부착)
4. 연구 업적 목록 1부 (최근 5년간 연구 업적만 기록)
5. 연구 계획서 1부 (연구비 운영 지침 참조)

제 7 조 (심사) 연구 과제의 심사는 연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차: 해당 분야 전문위원 개별 심사, 최종: 연구위원 공개 심사)

제 8 조 (지급) 지급이 결정된 연구 과제는 해당 년도의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총회 석상에서 발표하고 결과를 web-stie에 공고한다.

제 9 조 (의무)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하며 연구기간이 종료하고 2년 이내에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학술연구비 보조에 의한 연구임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 국내외학술지에 게재하고 별책 3부와 연구비 운영 지침에 의거 종결보고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문: 본 연구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연구비 번호)

영문: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Korean Society of Interventional Cardiology
(grant number)

제 10 조 (부칙)

1. 본 규정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연구비 관리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연구비 운영지침에 따른다.
3. 연구비 수혜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혜 연구비 전액을 회수한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산학협동연구비 규정

일부 개정 2013년 1월 25일

제 1 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산학협동 연구비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산학협동으로 중재심장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구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자격)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으로서 학술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논문 또는 연구 계획 이어 야 한다.

제 4 조 (재원) 본 연구비는 산학협동으로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사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재원으로 하며 연구비 지급 규모 및 방법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추천)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병원 순환기학 분야의 선임교수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 소속 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신청) 연구책임자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연구비 운영 지침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소정 양식)
2. 추천서 1부
3. 이력서 1부 (명함판 사진 부착)
4. 연구 업적 목록 1부 (최근 5년간 연구 업적만 기록)
5. 연구 계획서 1부 (연구비 운영 지침 참조)

제 7 조 (심사) 연구과제의 심사는 연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차: 해당 분야 전문위원 개별 심사, 최종: 연구위원 공개 심사)

제 8 조 (지급) 지급이 결정된 연구 과제는 해당 년도의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총회 석상에서 발표하고 결과를 web-site에 공고한다.

제 9 조 (의무)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하며 연구기간이 종료하고 2년 이내에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학술연구비 보조에 의한 연구임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 국내외학술지에 게재하고 별책 3부와 연구비 운영 지침에 의거 종결보

고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문: 본 연구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연구비 번호)

영문: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Korean Society of Interventional Cardiology
(grant number)

제 10 조 (부칙)

1. 본 규정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연구비 관리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연구비 운영지침에 따른다.
3. 연구비 수혜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혜 연구비 전액을 회수한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연구비 운영지침

일부 개정 2012년 7월 6일

일부 개정 2013년 1월 25일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원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

- (1) 연구비의 배정과 운용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연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상임이사회에 상정한다.
 - ① 연구비 지원 계획
 - ②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
 - ③ 연구비의 배정
 - ④ 연구 결과의 평가
 - ⑤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반 의무 미 이행 연구책임자에 대한 처분
 - ⑥ 기타 연구비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 3 조 (연구비 지원의 기본 원칙)

- (1) 연구비의 지원은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은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회는 학술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및 과제를 지정할 수 있다.
- (3) 선정된 연구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실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연구비 지원 과제의 연구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원 조건에 따라 연구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기관 공동 연구는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
- (5) 선정된 연구과제는 소속 병원의 IRB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

제 4 조 (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1) 연구비 지원과제는 각 연구계획서마다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2)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연구비의 감액 조정 등 연구계획의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
- (3)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 ①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 ② 연구진의 연구 수행 능력 및 연구 업적

- ③ 연구 목적의 명료성 및 연구의 필요성
- ④ 연구 방법의 타당성
- ⑤ 연구 결과의 공헌도 및 학문 발전에의 기여도
- ⑥ 연구비 산정의 합리성
- ⑦ 대한심혈관중재학회로부터 연구비를 수혜 받은 경력

제 5 조 (연구의 구분) 연구비 지원 과제는 연구 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다기관 공동연구와 단독연구로 구분한다.

제 6 조 (연구비 신청 자격)

- (1)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2) 연구기간 중 연구 책임자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 (3) 동일인이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연구책임자로 2과제 이상에 참여하여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기관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아닌 공동연구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 (4)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를 마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야 연구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5) 연구비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한 연구기관에서 1년에 2과제까지만 연구비를 수혜할 수 있다.
- (6) 기존에 이미 선행되었거나 초록이나 논문으로 발표된 연구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 7 조 (연구비 세부 항목 및 기준)

- (1) 단독 및 공동연구의 연구비는 연구 활동비, 보조연구원 수당, 회의비, 여비, 도서구입비, 전산 처리비, 인쇄비, 공과금 및 제 잡비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한다.
- (2) 연구비 중 연구 활동비 및 보조연구원 수당의 합계는 단독연구비는 30%, 다기관 공동연구는 연구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구 수행 과제의 성격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 활동비 및 보조연구원수당의 비중을 조정 할 수 있다.
- (3) 연구비는 중간보고 전까지 전체 연구비의 50%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연구비에 대한 별첨의 정산서와 중간보고서 접수 후 연구기간의 중간에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 (4) 보조연구원 수당, 회의비, 여비 및 연구위원회가 특별히 지정하는 소액의 세부항목 예산의 지출 증빙서류는 연구 책임자의 지불확인서로써 영수증에 대신할 수 있다.

제 8 조 (연구보고서 제출 및 학술지 발표)

- (1) 연구 책임자는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 중간보고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문헌, 이론 연구의 경우에는 중간보고서에 연구비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연구 중간보고서 1부를 제출하고,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연구 책임자는 연구 결과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학술대회에서 보고하고 연구기간이 종료하고 2년 이내에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학술연구비 보조에 의한 연구임을 명시하여 SCI등재 학술지에 게재하고 별책 3부와 연구비 운영 지침에 의거 종결보고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연구 결과 발표 논문 또는 단행본에 연구비 수혜에 대한 공지의 글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 9 조 (연구계획 변경 및 보고 기한의 연장)

연구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 기간, 연구내용 또는 제목, 연구진, 실행예산 등 연구 계획을 중대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별책본(단행본) 제출 기한의 연장을 당초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책은 PDF파일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 10 조 (연구 중단 시 보고)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행 중 해외여행, 사고,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를 3개월 이상 총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공동연구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연구비 지급의 중단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위원회의 심의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연구 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연구비의 지급 목적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연구 지원 신청서, 중간보고서 등의 기재 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4) 중간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5) 연구비 수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6) 기타 1년 이상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7) 연구 기간이 경과되고 2년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를 종결하여야 하나 적절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체한 경우.
- (8) 연구비 선정 후 1년 이내에 IRB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 12 조 (연구비의 집행 관리)

- ① 연구비의 집행, 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각 기관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 ② 연구비 관리 중 발생한 환차액 등 금액의 변화는 연구 활동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관리한다.
- ③ 다기관 공동연구의 경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 대표자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연구비는 책임 연구자가 속한 기관 가운데 책임 연구자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연구소와 협약을 맺어 지급한다.

<별표 1>

연구비 산출기준 및 지급방법(다기관 공동연구)

지출항목	내용 및 특기사항	산출기준	지급방법	증빙서류
I.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월 15만원 이내	.연구활동비 및 보조연구원 수당의 합계는 연구비 총액의 50%를 초과할수 없으며 각 해당 기관의 중앙관리 연구비로 결정된 경우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연구비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 별도계약을 맺은 경우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영수증 또는 지불확인서
	공동연구원 .1인당 연구책임자의 80% 이내	월 12만원 이내		"
II. 보조연구원 수당	.1인당 보조연구원 수당	실 경비		"
III. 회의비	.협의회 경비 등	실 경비		"
IV. 여비	.국내 및 국외여비	실 경비		"
V. 도서 및 물품구입비	.물품구입비, 참고 문헌 구입비,자료 복사비등	실 경비		영수증(단, 항목총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불확인서로 대체 가능)
VI. 전산처리비	.컴퓨터 사용료	실 경비		영수증
VII. 인쇄비, 공과금 및 제잡비	.보고서 인쇄비는 논문게재료, 공공요금, 기타 잡비 등 (연구비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	실 경비		영수증
총 계				

<별표 2>

연구비 산출기준 및 지급방법(조사·실험연구)

지출항목		내용 및 특기사항	산출기준	지급방법	증빙서류
I. 연구활동비	I. 연구책임자		월 10만원 이내	. 연구활동비 및 보조연구원수당의 합계는 연구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해당 기관의 중앙관리 연구비로 결정된 경우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연구비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 별도계약을 맺은 경우는 상임이사회에 결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영수증 또는 지불확인서
	공동연구원	. 1인당 연구책임자의 80% 이내	월 8만원 이내		-
	II. 보조연구원 수당	. 1인당 보조연구원 수당	월 10만원 이내		-
	III. 연구기기 구입비	. 연구기기 및 부품 구입비	실 경비		영 수 증
	IV. 소모성재료비	. 시약, 소모성 재료등 구입비	실 경비		-
	V. 기자재임차료	. 전산처리비, 연구기기, 비품임차료	실 경비		-
	VI. 참고문헌 및 자료수집비	. 도서구입비, 자료복사비, 조사경비(여비 제외)등	실 경비		-
	VII. 여비	. 국내 및 국외여비	실 경비		영수증 또는 지불확인서
	VIII. 회의비	. 협의회 경비 등	실 경비		-
	IX. 인쇄비, 공과금 및 제압비	. 보고서 인쇄비, 논문 게재료, 공공요금 기타 잡비 등 (연구비총액의 10% 범위내에서 인정)	실 경비		영 수 증
	총 계	. 연구활동비 및 보조연구원 수당의 합계가 연구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